

I. 설계 설명서

I.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사업은 “2019년도 국도4호선 우천권역 감응신호 구축사업”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

2. 사업위치 및 사업개요

2019년도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국도 4호선 우천권역

순 번	위 치	건설폐기물 수량(ton)		비 고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1	국도 4호선 관내	9	147	
2				
3				
계		9	147	

3. 설계 및 시공기준

본 공사는 건설폐기물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4. 공사기간

작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II. 등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공사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상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하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 · 간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업체(아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하천공사 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공사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피업지사시장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三. 理 人 營 社

Ⅲ. 특별시방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性状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性状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 폐알칼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 · 소각재 · 오폐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가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조정조 ·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동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소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제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 폐자재류(폐토사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 폐가전 제품 · 열경화성 폐합성 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도록 해체 ·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2) 폐타이어 · 폐가구류 및 폐가전 제품의 해체 · 압축 파쇄 · 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 유리 · 도자기 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외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이. 공동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 · 운반의 경우

-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하“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 용기 ·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 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상이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 폐내화물(廢耐火物) · 폐지 · 철강 슬래그 · 고철 · 폐유리조각 · 폐목재 ·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 폐용기류 · 폐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야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 · 폐석회 · 연소계(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분진 · 폐주물사 · 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 세척 ·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폐수 등의 폐기물은 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폐수

① 유기성 오폐수(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 함량이 40% 이상 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 ·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 용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목적에 따라 매립 시설복용용 또는 토지 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㉕ 축산폐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㉔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㉖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와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㉖ 소각하여야 한다.

㉗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 ·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자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 호수 ·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 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 이하로 파쇄 · 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 폐금속류 · 폐토사 ·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㉞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㉟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 · 운영하는 자(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에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압축 · 파쇄 · 회체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 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 운반 중 흔들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 폐기재류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기류와 기타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제지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건설폐기물은 흙달이거나 홀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홀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 (나) 건설폐기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류를 정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 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기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기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류 (페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 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 · 운반의 경우

(1) 분진 · 폐농약 ·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흘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 운반 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탱크 · 용기 ·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 (1) 지정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폐유기용제는 회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흘날이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흘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피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불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 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제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지정 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 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관 기간 :	④ 관리 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 사항 · 보관시 : · 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관리 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60cm 이상 × 세로40cm 이상(드럼통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15cm 이상×세로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주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당 150kg 이상이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의 별표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함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 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유수 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 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

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 응집,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 처리하여야 한다.
- ㉣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 ㉤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이하)
-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이하)
- ㉨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이하)
- ㉩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이하)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mg 이하
-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mg 이하)
-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mg 이하)
- ㉭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mg 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나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다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라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이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③ 기타 폐유기 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가 소각하여야 한다.
 - 나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다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라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리)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조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조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페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페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계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 소각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융융 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융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융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 고탄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고행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행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 고탄성 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행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도용 또는 토지 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천㎡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2. 1. 1>

(하) 안전화 · 고행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 · 가수분해 · 산화 · 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행화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 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 ·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 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와 폐기물종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 ·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 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 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 폐기물종간처리업자, 폐기물종합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25조의 2 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 · 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 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 ·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 ·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 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최종처리업자 ·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 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위탁하기 전에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 폐기물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V.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IV.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시행중 파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 사.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아.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자.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 차. 수급자는 본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카.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